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63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용혜인 · 임호선 · 서미화
김영환 · 소병훈 · 손 솔
전종덕 · 이수진 · 이성운
모경종 · 송옥주 · 서왕진
한창민 · 황운하 · 정혜경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소방사무는 그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소방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명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임명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와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치권력으로부터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소방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방청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

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66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1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방청장) ①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②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국가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방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제3조의3(소방청 차장) ① 소방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소방청장을 보좌하며, 소방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청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소방청장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소방청장) ①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u> <u>②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u> <u>③ 소방청장은 국가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④ 소방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u>
<u><신 설></u>	<u>제3조의3(소방청 차장) ① 소방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u> <u>② 차장은 소방청장을 보좌하며, 소방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	제6조(임용권자) ① ----- ----- -----

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u>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u> ② ~ ⑥ (생략)	-----, -----<u>소방령</u>-----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